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법률과 상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며,
- 나. 조례에서 회의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입법형식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고 있음. 조례로 그 절차를 다시 규정할 경우 실익보다는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중복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4항, 안 제17조제6항 및 제7항)

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준용규정은 삭제함(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2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5, 팩스 032-440-8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과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교육감은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한 후 그 결과를 각각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시장·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시장·교육감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삭제> ⑧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1조(준용)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 ----- 「인천광역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와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 제17조(과태료의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제2조의2(과태료 감경)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 지방자치법 ○ 제43조(의회규칙) ○ 제71조(회의규칙) ○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8조(위원의 임기) ○ 제30조(특별위원회) ○ 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 제32조(위원장의 직무) ○ 제33조(부위원장) ○ 제34조(소위원회) ○ 제35조(전문가의 활용) “세부사항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89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

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재임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임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위원회) ① 법 제56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결의안은 그 이유와 활동기간, 위원 정수, 구체적인 직무의 범위 등을 명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이 경우 위원 정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모든 위원이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⑤ 영 제56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의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심사한 안전이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전(활동기간 연장 또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다)이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그 안전이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등) 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을 개선하거나 보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전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33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2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선출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3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5조(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전에 한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며, 해당 안전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위촉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⑤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장이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촉된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내에 위촉안전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전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또는 위촉안전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